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광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34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1.

발 의 자 : 이광희 · 안태준 · 송재봉
박해철 · 서미화 · 전진숙
김문수 · 이주희 · 강준현
양부남 · 이연희 · 박정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“수사처”라 함)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와 정원,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수사처 제도 도입 단계부터 인력 부족,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, 최근까지도 수사처의 양적·질적 강화를 위해 임기 및 정원, 결격사유 및 공직임용 등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수사처검사,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수사처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도는 폐지하며, 결격사유 및 임용제한을 강화하여 수사처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8조 등).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25명”을 “7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임기는 3년으로 하고,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정년은”을 “정년은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본문 중 “40명”을 “12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임기는 6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으며, 정년은”을 “정년은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20명”을 “60명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제5호 중 “2년이”를 “3년이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2년”을 “3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년이”를 “3년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1년이”를 “3년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1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①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경우에도 적용한다.

② 제13조제1항제5호, 제16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및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한 경우에 적용한다.

제3조(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제8조제2항,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사처검사, 수사처수사관 및 직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행하는 각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수사처검사) ① (생 략)	제8조(수사처검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,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<u>25명</u> 이내로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75명</u> -----.
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<u>3년</u> 으로 하고, <u>3회에 한정하여 연임</u> 할 수 있으며, <u>정년은 63세</u> 로 한다.	③ ----- <u>정년은</u> ----- 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수사처수사관) ① (생 략)	제10조(수사처수사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, <u>40명</u> 이내로 한다. 다만,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.	② ----- ----- <u>120명</u> ----- -----.
③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<u>6년</u> 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으며, <u>정년은 60세</u> 로 한다.	③ ----- <u>정년은</u> ----- -----.
제11조(그 밖의 직원) ① (생 략)	제11조(그 밖의 직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	② -----

20명 이내로 한다.

제13조(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, 차장, 수사처검사,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.

1. ~ 4. (생략)

5.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② (생략)

제16조(공직임용 제한 등) ①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(「대한민국헌법」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다), 검찰총장,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·대통령비서실·국가안보실·대통령경호처·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② 처장, 차장, 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.

③ 수사처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

60명-----.

제13조(결격사유 등) ①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
-----3년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공직임용 제한 등) ① ---

-----3년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3년-----

-----.

③ -----3

년-----

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. ④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<u>1년</u> 동안 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.	----- -----. ④ ----- -----<u>3년</u>----- ----- -----.
--	---